

개정 특허법(법률 제13096호) 및 실용신안법(법률 제13088호) 주요 내용

□ 공지에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 (제30조제3항 신설)

※ 실용신안법: 제5조 삭제 후 특허법 제30조 준용 규정

- (개정 내용) 출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'출원 시' 공지에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명세서 등 보정기간 및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(단, 설정등록 이전)까지 공지에외주장 보완 가능

< 공지에외주장 보완 제도 >

현행	⇒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원시 주장, 30일내 증명서류 제출(원칙) • <신 설> • <신 설> 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원시 주장, 30일내 증명서류 제출(원칙) •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보완(예외) • 특허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(단, 설정등록 이전)(예외)

- (적용 대상) '15.7.29.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(실용신안도 동일)

□ 등록결정 이후 분할출원 제도 도입 (제52조제1항제3호 신설)

※ 실용신안법: 제11조에서 준용

- (개정 내용) 특허출원인이 시장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(단, 설정등록 이전) 까지도 분할출원 가능

< 분할출원 가능 기간 >

현행	⇒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•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기간 • <신 설> 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 •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기간 • 특허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(단, 설정등록 이전)

- (적용 대상) '15.7.29.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(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, 재심심결을 포함한다)의 등본을 송달 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(실용신안도 동일)